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24
-----------	-----

2022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29일, 심미경 의원 외 28명
2.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3. 상정일자

-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심미경 의원)

1. 제안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게 되어있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회 위원 내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9일 심미경 의원 등 29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124호로 발의되어 2022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방식의 변경을 통해 기금운용 심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5개의 기금은 아래와 같이 별도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식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전반 역시 위원회별로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연번	기금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근거 조항	소관부서
1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등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	생태전환교육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3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4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5조 등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등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주) 굵은 글씨와 회색으로 표시된 기금이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기금임

-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13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이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심의 과정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있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¹⁾ 현행 규정을 고려했을 때 기금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용 시 사전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개별 기금의 조성 규모(예정)가²⁾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억 1천 4백만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648억 1천 9백만원, 신청사 및 연수원 관리기금 936억 9천 4백만원으로, 기금이 교육청 재정에서 참여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 전반의 사전·사후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1)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촉직 위원 비율 명시에 대한 검토

- 안 제121호 제7조제1항, 안 제122호 제6조제3항 및 안 제124호 제6조제1항은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에서 위원 정수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³⁾ 위원 정수 상한 조정에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안번호 383) 기준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소 비율을 3분의 1로 규정하는 것 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위촉직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제한 경우 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었을 때 조례의 효력에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입법경제상 제정의 실익이 낮을 수 있다”⁴⁾ 점에서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심의위원회 구성 전반을 다루는 동 조례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에 상위법의 규정 사항을 인지시킨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조문 내용상의 중복성을 이유로 위촉직 위원 비중을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13500, 2022.9.6.).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식에 관한 검토

- 안 제121호 제7조제2항, 안 제122호 제6조제4항 및 안 제124호 제6조제1항제1호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조례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당연직 위원인 부교육감과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 개정조례안의 동 조문은 심의 과정 전반에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방기금법」 등에 따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문기관으로서⁵⁾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지방자치

4) 법제처(2018),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쪽.

5)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 설치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단체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이고, 특히 「지방기금법」 제5조 제1항은⁶⁾ 기금 관리·운용의 최종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그 운용 전반에 있어 심의위원회 활동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국가재정법」 제정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기금운용 심의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관리 주체의 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검토보고서 의견⁷⁾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나 타 시도교육청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사례 및 「국가재정법」에서 규정된 중앙부처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근거 등에 비추어 부단체장 책임 하에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500, 2022.9.6.).

- 이와 관련하여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13조에 따라 설치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이 자문기관은 조례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다른 자문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관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문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20-0158).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2005.4.), 「국가재정법안(정부제출)」, 「국가건전재정법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등 5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122-123쪽.

분석한 결과, 48개 위원회 중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 하여⁸⁾ 선출하는 위원회는 5개,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 하여 선출하는 위원회는 29개,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를 호선하여 선출하는 위원회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붙임자료 1 참조).

- 서울시 역시 22개 기금운용심의위원회⁹⁾ 중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는 위원회는 8개로 나타나 다수의 위원회가 집행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붙임자료 2 참조),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제74조 제3항에¹⁰⁾ 따라 기금 관리주체의 장이 위원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사례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자체가 자문기관의 결정 사항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심의·의결사항이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¹¹⁾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기금운용주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규정함에 있어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경우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및 용어에 관한 검토

8) ‘위원 중 호선’은 ① 위촉 위원 중 호선과 ② 위원 중 선출, ③ 민간위원 중 호선 등의 표현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맡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이하 같음.
9) 기금 내에서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는 개별 위원회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10)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1) 법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 법령 상 규정이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행정청의 입장에서 “자문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그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안 여부의 결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한편 근거 없거나 부당한 의견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쉽사리 배척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안 제121호 제7조제3항제2호, 안 제122호 제6조제5항제2호는 위촉직 위원 중 “민간 전문가” 라는 용어를 “전문가”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와 법령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민간 전문가” 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500, 2022.9.6.).
- 그러나 안 제121호 제7조제1항 및 안 제122호 제6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을 정의함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이라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상위법령에 “민간 전문가” 로 명시되어 있는 용어를 “전문가” 로 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더라도 “민간 전문가” 를 “전문가” 로 규정한다고 해서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거나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안 제124호 제6조제1항제2호와 제3호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크게 “당연직 위원” 과 “민간위원” 으로 구분하고 있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 이는 위원회 위원 구성을 크게 위원의 자격이나 선임 방법에 따라 구분했을 때 각각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으로 구분함에 비추어 볼 때 조례상 용어 사용의 혼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연직 위원” 을 “공무원 위원” 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2]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구분

유형	구분	내용
위원의 자격	공무원인 위원	위원으로서 공무원 자격을 요하는 경우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공무원인 위원에 포함)
	민간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유형	구분	내용
위원의 선임방법	당연직 위원	위원회 구성 근거(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 중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경우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121호 제7조제2항, 안 제122호 제6조 제4항 및 안 제124호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할 경우 위원장인 부교육감과 부위원장인 해당 기금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됩니다.
- 한 예로 안 제124호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경우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동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정수 9명 중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된 3명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합한 5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안 제124호와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부교육감은 물론 담당 국장인 교육행정국장도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되는바, 심의위원회가 기금을 총괄하여 담당해야 할 담당 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협조부서의 장(총무과장, 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장)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안 제121호와 안 제122호의 경우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당연직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부교육감과 기금담당 국장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관계 규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부교육감과 소관부서 국장이 삭제되므로, 안 제121호 제7조제3항

제1호와 안 제122호 제6조제5항제1호에 각각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과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500, 2022.9.6.).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 민간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그 분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3호).

V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4
----------	-----------

제안연월일 : 2022년 12월 1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최종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받고 있는바, 기금 운용사무의 일부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함.
-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의미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고자 함.
- 한편, 기금 규모 증대에 따라 사전 통제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민간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민간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연직”을 “공무원”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u>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u></p> <p>2. <u>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u></p> <p>3. <u>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u></p>	<p>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 ----- -----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1.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2. <u>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u></p> <p>3. <u>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 <u><신설></u></p>	<p>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개정안과 같음)</p> <p>1. <u>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2. <u>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u></p> <p>3. <u>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u></p> <p>가.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u></p> <p>나. <u>기금의 조성·운영·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u></p>

<p>② ~ ④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있는 전문가</p> <p>다.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② ~ ④ (개정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또한, 같은 항 제2호 중 “당연직”을 “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다.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u></p> <p>2. <u>당연직</u> 위원은 <u>총무과장</u>, 예산담당관, <u>교육재정과장</u>으로 한다.</p> <p>3. 민간위원은 <u>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u>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 <신설> <신설></p>	<p>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 --- <u>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u></p> <p>1. ----- -----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2. <u>공무원</u> 위원은 <u>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u>----- -----.</p> <p>3. 민간위원은 「<u>지방공무원법</u>」 제31조에서 정한 <u>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u>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가.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u> 나. <u>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u> 다. <u>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u></p>

<신설>

② ~ ④ (생략)

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 ④ (현행과 같음)